

2008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

의안 번호	38
----------	----

제출일자 2008. 5.

제출자 양주시시장

1. 제안이유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과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득하여 그 관리계획에 따라 집행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가. 재산총괄

- 건물신축 : 1동 1,077.61㎡, 1,900,000천원

나. 사업별 공유재산 취득계획

1)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사업(변경)

- 주관부서 :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
- 소재지 : 양주시 광사동 53-4번지
(고읍택지개발지구 내 근린공원 2호)
- 취득대상
 - 토지 : 한국 토지공사에서 기부채납 받음
 - 건물(변경)

기준			변경		
구분	건물규모 및 연면적	예산액	구분	건물규모 및 연면적	예산액
건물	지상3층 991.7	1,400,000	건물	지하1층 지상3층 1,077.61	1,900,000

○ 그간의 추진사항

- 2005.11.14. : 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계획 수립
- 2007.03.16. :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(2007년 제2차)
- 2007.04.09. : 2007. 상반기 투융자심사(적정)
- 2007.05월~06월 : 수요도 설문조사 실시
- 2007.07월~12월 : 청소년수련시설건립심의위원회 개최(2회)
 - 타 시·군 청소년문화의집 벤치마킹 추진(5개소)
 - 국가청소년위원회 기본설계 검토완료
 - 실시설계(안) 완성

○ 향후 추진계획

- 2008.05월~12월 : 공사추진 및 준공

○ 취득사유

-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위하여 다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.
- 2008년 제2회차 청소년수련시설건립심의회 심의시 청소년 문화의집의 다양하고 실리있는 활용을 위하여 지하1층 증설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지상3층 건립계획을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.
- 건립지는 매우 광범위한 주민밀집지역이므로 청소년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다양한 용도로 공동사용할 수 있는 지하층의 넓은 다목적실(공연, 영화관람, 발표회 등)반영요구

○ 따라서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적 활동 및 다양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조성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실 설치 등에 대한 청소년 문화의집의 계획 변경 대상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취득대상 재산 목록

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 : ㎡, 천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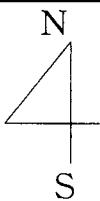
[당초]

일련 번호	구분	재 산 의 표 시			추 정 가 액 (천원)	취 득 시 기	취 사 득 유	취득재산 소유자 소· 명	비고
		지목 구조	소 재 지	수량 (㎡)					
	총계				1,400,000				
1	건물	철근 콘크리트	광사동 53-4	991.7	1,400,000	2008.10	청소년문화의 집 신축	양주시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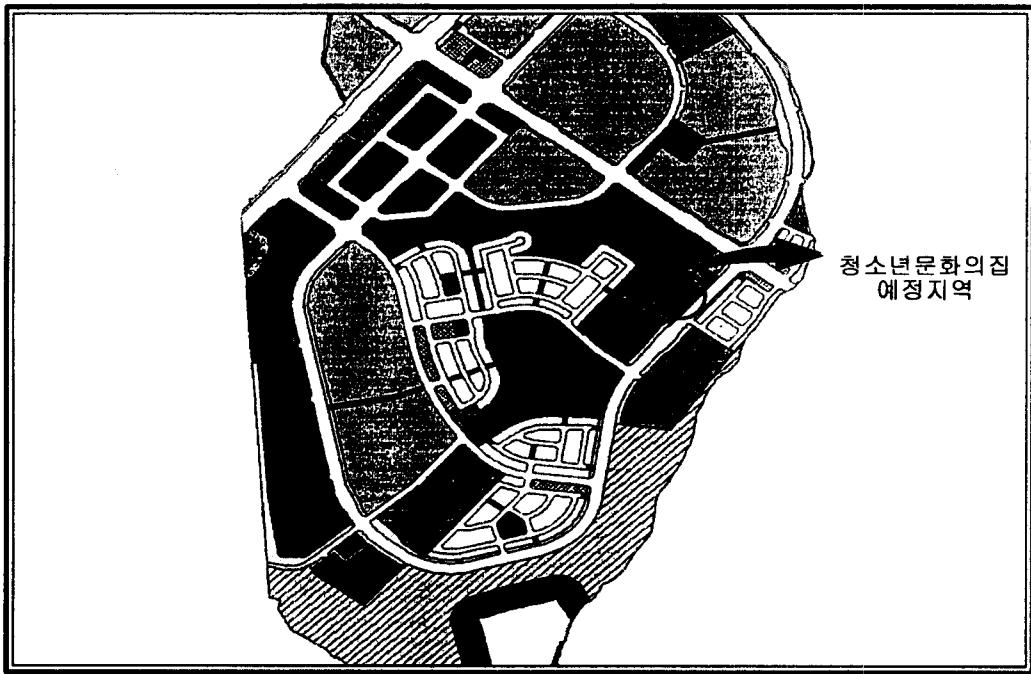
[변경]

일련 번호	구분	재 산 의 표 시			추 정 가 액 (천원)	취 득 시 기	취 사 득 유	취득재산 소유자 소· 명	비고
		지목 구조	소 재 지	수량 (㎡)					
	총계				1,900,000				
1	건물	철근 콘크리트	광사동 53-4	1,077.61	1,900,000	2008.10	청소년문화의 집 신축	양주시	

위 치 도



청소년문화의 집 위치도



【고양동 개발지구】